## 전학처분듕취소 청구의 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8누〇〇〇〇 [2심]	사건유형	학교폭력
원 고	□□□ 외 1명	피 고	○○고등학교장
판결선고일	[2심]2018. 12. 18. 항소기각	비고	[1심]2018. 7. 20. 원고패소
사건개요	<ul> <li>○ 원고들과 피해학생들은 2017년에 ○○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음</li> <li>○ ○○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'이 사건 위원회'라고 한다)는 2017. 9. 5. 원고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(이하'이 사건 회의'라고 한다)를 개최하여,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이하'학교폭력예방법'이라고 한다) 제17조 제1항 제2호, 제5호, 제8호, 제3항, 제9항에 따라'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특별교육 10시간, 전학, 특별교육이수 5시간,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'의 조치를 의결(이하'이 사건 의결'이라 한다)하였음</li> <li>○ 피고는 2017. 9. 8. 이 사건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하였음(이하 위 각 통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'이 사건제1처분', 보호자에 대한 부분을 '이 사건 제2처분'이라 한다)</li> <li>○ 원고들은 2017. 9. 9.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, 인천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7. 10. 13. 이를 기각하였음</li> </ul>		
주 문	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피고가 2017. 9. 8.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.		
항소취지	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9. 8.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을 취소한다(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'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'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, 원고들은 각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된다).		
판결이유	<ul> <li>○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음</li> <li>○ &lt;1심&gt; 판결요지</li> <li>-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,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</li> </ul>		

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. 따라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여부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, 가사이 사건 제2처분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그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음.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함

-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 전에 가해학생인 원고들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사건 내용을 알리고,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절차를 거쳐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고 할 것임.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가 '이 사건 의결 후 피고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'에도 원고들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
-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한데다가,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임.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음
- ■■■과 원고 □□□는 2017. 8.초경부터 2017. 8. 28.까지 피해학생에게 통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의 정도를 넘어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을 모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, 원고 ■■■은 ■■■과 원고 □□□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으며,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해당함.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
-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거기에 재량권 일탈·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.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

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